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40호 2016. 6. 8 (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 - 53호 거창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2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6 - 593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
- 거창군 공고 제2016 - 611호 남하-가조(1)지방도 확포장공사 공시송달공고 ..... 10
- 거창군 공고 제2016 - 612호 장기-우혜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시송달공고 ..... 13
- 거창군 공고 제2016 - 617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15

회 람									
--------	--	--	--	--	--	--	--	--	--

## 거창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거창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08일

### 거 창 군 수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거창일반산업단지

2. 지역·지구 등의 위치 및 면적

- 거창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 면 적 : 740,753.7m<sup>2</sup>

3.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 고시일 : 2016. 05. 04

4. 지형도면 등의 고시(공보게재)일 : 2016. 06. 08

5.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는 거창군청(승강기경제과)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하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 운영 체계를 구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보완(안 제8조)
  - 나. 운영위원회 구성 현행화(안 제9조)
  -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안 제10조)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편번호 50147] 에게 서면이나 메일(gomju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로컬푸드담당 **☎(055)940-81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 1. 제안이유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하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 운영 체계 구축

##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보완(안 제8조)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차기 정기회의 시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나. 위원 구성의 현행화(안 제9조)

-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함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 기능 현행화(안 제10조)

- 운영관련 불합리한 사유 발견 시 시정요구권한 추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 (가) 예고기간 : 2016. 5. 19. ~6. 7.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을 신설한다.

제9조제1항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하고, 같은조 2항 “운영위원장은 학교급식관련 담당과장이 되고,”를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또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 위원은”을 “운영위원회 위원은 거창군 급식지원담당주사,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하고”로 하고,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7호“군내 교원단체 추천인”을 “군내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각호를 지정 한다.

1. 수탁기관 관리자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4.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군내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
6.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10조제3호 중 “점검”을 “점검과 불합리한 사유 발견 시 시정요구”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p> <p>①~⑦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lt;신 설&gt;</p> <p>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 ----- <b>10명</b>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운영위원회의 <b>운영위원장은 학교급식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b>,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보건급식 담당주사</li> <li>3.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li> <li>4.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li> <li>5.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li> <li>6.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li> <li>7. 군내 교원단체 추천인</li> <li>8.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li> <li>9. 그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li> </ol>	<p>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p> <p>①~⑦ (현행과 같음)</p> <p>⑧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차기 정기회의시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 ----- <b>15명</b>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b>운영위원장</b>,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b>거창군 급식 지원담당주사,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급식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하고</b>,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ol> <p style="color: blue;">&lt;삭 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li> </ol> <p style="color: blue;">&lt;삭 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li> <li>4.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li> <li>5. 군내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li> <li>6.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li> <li>7. 그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li> </ol>

<p>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li> <li>2. 월별 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li> <li>3. 월별 급식지원센터 운영사항 <u>점검</u></li> <li>4. 운영인력, 집행, 경비 등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li>3.----- <u>점검과 불합리한 사유 발견시 시정요구</u></li> <li>4.-----</li> <li>5.-----</li> </ol>
--	--

## 관계법령

### □ 「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 시 송 달 공 고

『남하-가조(1)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등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및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6. 3.

###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남하-가조(1) 지방도 확·포장공사
2. 사 업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일원
2.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3. 공 고 기 간 : 2016. 06. 3. ~ 2016. 06. 17.
4. 공 고 내 용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건설담당 (☎055-940-353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다. 협의방법 : 서류 구비 후 서면 청구
  - 라. 보상방법 및 절차 : 개별 협의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
  - 마. 보상 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보상금수령용), 주민등록초본 1통
    - 통장사본 및 인감도장 지참

##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기타
					주소	성명	
1	남상면 전척리	523-3	전	59	대구 수성구 신매동 *** 신매태성맨션 ***동 ****호	최*남	지분1/4
2	남상면 전척리	523-8	도	169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	이*우	
3	남상면 전척리	504-1	답	116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	송*용	
4	남상면 전척리	523-7	전	85	주소 불명	문*성 외 1명	
5	남상면 전척리	523-21	전	634	주소 불명	이*우	
6	남상면 전척리	532-1	도	7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	신*민	
7	남상면 전척리	532-3	전	13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	신*민	
8	남상면 전척리	532-5	도	4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	신*민	
9	남상면 전척리	538-2	도	69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	신*민	
10	남하면 무릉리	321-1	답	32	주소 불명	최*학	
11	남하면 무릉리	446-2	전	174	주소 불명	정*환	
12	남하면 무릉리	462-3	답	28	주소 불명	최*산 외 3명	
13	남하면 무릉리	463	답	7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536	김*수	
14	남하면 무릉리	559	천	66	주소 불명	김*환	
15	남하면 무릉리	584-1	천	38	주소 불명	김*윤	
16	남하면 무릉리	585-1	천	21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정*의	
17	남하면 무릉리	672-1	답	191	주소 불명	유*수 외 4명	
18	남하면 무릉리	672-2	답	305	주소 불명	유*수 외 3명	
19	남하면 무릉리	1705-1	답	6	남하면 무릉리 ***	김*환	
20	남하면 무릉리	1728-1	답	253.3	남하면 무릉리 ***	김*환	
21	남하면 무릉리	1660-9	답	2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	유*모	
22	남하면 무릉리	304-2	답	8	남하면 무릉리 ***	최*영 외 1명	
23	남하면 무릉리	305-20	답	66	경북 안동시 배움길 **	김*수	
24	남하면 무릉리	325-5	도	334	대구시 서구 평리동 *****	최*구	
25	남하면 무릉리	557-3	천	69	주소 불명	김*태	
26	남하면 무릉리	563-4	답	175	남하면 무릉리 ***	백*문	
27	남하면 무릉리	661-4	천	43	주소 불명	김*관	
28	남하면 무릉리	661-5	천	63	주소 불명	김*관	
29	남하면 무릉리	664-5	천	46	주소 불명	김*대	
30	남하면 무릉리	666-7 (666-14)	천	6	주소 불명	최*열	
31	남하면 무릉리	666-7 (666-15)	천	43	주소 불명	최*열	
32	남하면 무릉리	666-8	천	255	주소 불명	최*열	
33	남하면 무릉리	산255-1	임	44	주소 불명	전*식	
34	남하면 무릉리	산80-1	도	298	남하면 무릉리 ***	최*탁	
35	남하면 무릉리	산84-4	임	601	남하면 무릉리 ***	김*환	
36	남하면 무릉리	산84-5	임	36	남하면 무릉리 ***	김*환	
37	남하면 무릉리	산84-6	임	444	남하면 무릉리 ***	김*환	
38	남하면 무릉리	산84-1	도	496	남하면 무릉리 ***	김*환	
39	남하면 무릉리	산84-2	도	893	남하면 무릉리 ***	김*환	

## 6. 기타사항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건설담당 (☎055-940-353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장기-우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등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및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6. 3.

###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장기-우혜간 도로 확·포장공사
2. 사 업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기리 ~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일원
2.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3. 공 고 기 간 : 2016. 06. 3. ~ 2016. 06. 17.
4. 공 고 내 용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건설담당 (☎055-940-353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다. 협의방법 : 서류 구비 후 서면 청구
  - 라. 보상방법 및 절차 : 개별 협의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지급
  - 마. 보상 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보상금수령용), 주민등록초본 1통
    - 통장사본 및 인감도장 지참

##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기타
					주소	성명	
1	가조면 장기리	693-2	답	24	가조면 사병리 ****	변*석	
2	가조면 장기리	706-2	대	7	가조면 장기리 ***	정*진	지분1/4
3	가조면 장기리	706-2	대	7	가조면 장기리 ***	하*찬	지분1/4
4	가조면 장기리	706-2	대	7	가조면 장기리 ***	김*선	지분1/4
5	가조면 장기리	1498-1	답	3.7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	김*명	
6	가조면 장기리	1535-1	답	9.2	가조면 장기리 ***	김*년	
7	가조면 사병리	1057-2	도	159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변*선	
8	가조면 사병리	1330-1	답	1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번길 *, ***동 ***호	하*길	지분 7/112
9	가조면 사병리	1330-1	답	111.3	부산광역시 남구 신정변영로**번길 **(대연동)	하*주	지분 7/112
10	가조면 사병리	1389-1	답	189	가북면 해평리 ****	유*원	지분1/4
11	가조면 사병리	1434-1	답	454.3	가조면 사병리 ***	변*주	
12	가조면 사병리	1442-1	답	346.9	가조면 사병리 ***	박*구	지분1/3
13	가조면 사병리	1442-1	답	346.9	가조면 장기리 ***	박*선	지분1/3
14	가조면 사병리	1442-1	답	346.9	가조면 사병리 ***	박*식	지분1/3
15	가조면 사병리	1444-1	답	453	가조면 사병리 ***	신*협	
16	가조면 기리	746	답	1,085	가조면 기리 ***	이*출	지분 14*119
17	가조면 기리	747-8	답	234	가조면 기리 ***	이*출	지분 14/119
18	가조면 기리	758-6	도	215	주소 불명	김*선	
19	가조면 기리	791-1	답	1,705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	이*호	
20	가조면 마상리	232-5	답	108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	이*석	
21	가조면 마상리	232-7	답	120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	이*석	
22	가조면 마상리	235-17	답	62	가조면 마상리 ***	이*택	
23	가조면 마상리	235-9	답	56	가조면 마상리 ***	이*택	
24	가조면 마상리	769-1	답	68	가북면 몽석리 ***	최*림	

## 6. 기타사항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건설담당 (☎055-940-353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관내 자전거보관소 및 도로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하오니, 해당 자전거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16. 6. 7.

### 거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6. 6. 7. ~ 2016. 6. 21.
2. 방치장소 : 관내 도로 및 자전거보관소 등
3. 공고대상 : 무단방치자전거 25대(별첨 열람부 참조)
4. 처분내용 :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해당자전거를 매각 또는 기증하며,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을 우리 군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우리 군 금고에 귀속됨.
5. 문 의 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940-3596)

- 첨부 1.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부 1부.  
2. 무단방치자전거 사진 1부. 끝.